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醫務)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추이 등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6.
3. 회부연월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의무(醫務)장교의 의무(義務)복무기간 단축

□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및 약사 중 의무장교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u>육군3사관학교</u> , <u>국군간호사관학교</u> 또는 <u>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u>하고</u>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4. ----- ----- <u>제12조</u> <u>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u> ----- ----- ----- <u>하며</u> ----- ----- -----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u>
--	--

□ 현행법 제6조¹⁾는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²⁾는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치과

- 1)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 2)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

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의무장교”라고 함)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기존에는 의대생들이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복무환경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³⁾, 최근 의대생 중 현역병 복무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의대생 중 현역병 복무 인원]

(2025년 5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50	214	191	267	1,363	1,585

자료 : 국방부

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의대생=군의관’ 공식 깨진다…현역병 선호 증가(데일리메디, 2023. 1. 9.)

□ 개정안은 군의관 등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 보건 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행 의무복무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무병과의 복무 현원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무장교의 추가 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경우,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의무장교 충원 인원을 현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⁴⁾, 개정안에 따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논의는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군 의료인력 충원 확대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3년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등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무장교의 복무기

4) 안 제7조제7항에 따라 임용 전 약 4~5주의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할 경우 실제 의료인력으로서의 활용기간이 단축되므로, 필요한 인원 규모는 1,200명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간만을 단축하는 경우 타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셋째,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은 의대 정원 조정, 공중보건의사 제도, 민간의료 인력 배치 문제 등 다른 정책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정합성을 아울러 고려한 종합적인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방부는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타 특수병과 장교를 포함한 학사장교 및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등 타 병역의무이행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선발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 복무기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타 병과 장교·부사관·준사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장교만의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의무장교 지원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은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병역제도의 의무복무기간만 축소하는 방안은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117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49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0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6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42호)⁵⁾이 현재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들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한지아의의원안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정동만의원안은 동 인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추이 등

○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중보건의사	1,211명	1,318명	1,035명	1,050명	1,114명	716명	743명
의무장교	706명	758명	822명	695명	754명	824명	692명

○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복무 현황(연말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중보건의사	3,539명	3,489명	3,524명	3,365명	3,172명	2,852명	2,548명
의무장교	2,449명	2,471명	2,446명	2,438명	2,426명	2,426명	2,430명

○ 유사 역종별 복무기간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자격 : 의사) 공익법무관(자격: 변호사) 공중방역수의사(자격: 수의사)	3년 (3주)	군의원(자격: 의사) 법무장교(자격: 변호사) 수의장교(자격: 수의사)	3년 (4~5주)
		학사장교	3년 (16주)
전문연구요원	3년 (3주)	육군 ROTC	2년 4개월 (12주)